

2021년도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R&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「2021년도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R&D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29일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

1 사업목적

□ 추진방향

-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
2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5억원 / 과제당 1.5억원 이내 ※ 지원 규모 변동 가능

□ 지원내용 :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*에 필요한 자금

지원분야	지원규모	총사업비* 대비 민간부담 비율	지원기간
성과공유제 이행 과제	1.5억원/년 이내	총사업비 40% 이상 부담(현금+현물) ※현금 부담 총사업비 10% 이상	1년 이내
중소기업 제안과제	1.0억원/년 이내		

* 총사업비 : 경기도 지원금 + 민간부담금(현금 + 현물)

** 상용화 과정 : 시제품(목형) 제작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, 공정개선 등

3 지원대상

□ 지원 대상과제

- 성과공유제 이행과제(자유응모) : 국내 대·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, 사전 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 경우
 - *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신청 승인확인서(협약 12개월 이내) 및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(과제종료 2년 이내) 제출 必 : 별첨 파일 8 ~ 10 참조
 - ※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과제등록·확인 프로세스 확인 요망(<https://www.benis.or.kr/>)
- 중소기업 제안과제(자유응모) :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'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'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
 - ※ 구매조건 : 기술 수요처(대·중견기업)의 구매 예상액이 과제수행 3년차 (2022년 ~ 2024년)까지 경기도 지원금의 1.5배 이상인 과제 : 별첨 파일 6 참조

□ 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
※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

신청 자격	
경기도 소재 (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)	① 경기도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*' 설치·운영
	② 경기도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*' 설치·운영

* 등록공장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
**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: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'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

□ 추진체계 : 단독 또는 컨소시엄(공동수행) 지원

- ① 단독 지원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
- ② 컨소시엄 지원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

주관기관	참여기관	비고
경기도 소재 중소기업	가.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. 대기업, 중견기업 다. 비영리기관(대학 및 연구기관)	중소기업(경기도 소재)을 제외하고
비영리기관 (대학 및 연구기관)	경기도 소재 중소기업	지역제한 없음

4 수요처 역할 및 범위

□ 수요처(대·중견기업) 역할

○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

- 선정평가 전 구매이행계획서 제출
- **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**에 따라 정당한 사유*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**사업 참여제한 3년**

* 정당한 사유 : 타 기관(업)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·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(수요처 및 주관연구기관 입증)

□ 수요처 범위

○ 기업규모 : 대기업 및 중견기업

< 국내 수요처(대기업·중견기업)의 자격 및 범위 >

· 자격

동 사업을 통한 과제 발굴, 기술개발 지원,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**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**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(단,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)

· 범위

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(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)

*** 대기업 범위 : 매출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(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속하는 기업)**

**** 중견기업 여부확인 : 한국중견기업연합회 '중견기업 확인서' 발급 가능 (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사이트 : www.hpe.or.kr)**

5 도비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

□ 분야별 지원조건

지원분야	지원규모(개발기간)	도지원금	민간부담금
성과공유제 이행과제 (자유응모)	1.5억원 이내 (1년 이내)	총사업비의 60% 이내	총사업비의 40% 이상 (총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부담)
중소기업 제안과제 (자유응모)	1.0억원 이내 (1년 이내)		

< 사업비 계상 예시 >

▶ 도지원금 1.5억이며, 주관기관(중소기업)이 단독개발인 경우

구분	도 지원금	민간부담금		합 계
		민간현금	민간현물	
계산식	도 지원금 ≤ (총 사업비 × 0.6)	민간현금 ≥ (총 사업비 × 0.1)	총 사업비 - (도 지원금 + 민간현금)	-
금액	150,000,000원	25,000,000원	75,000,000원	250,000,000원
비중	60%	10%	30%	100%

※ 총 사업비 산정방식 : 도 지원금 ÷ 60% = 총 사업비

6 기술료

□ 본 사업에서 기술료 징수는 면제함

7 지원절차 및 일정

□ 선정일정

지원분야	공고 및 접수	선정평가	협약체결
성과공유제 이행과제 (자유응모)	3. 29. ~ 5. 13.	5~6월	6월 말
중소기업 제안과제 (자유응모)			

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절차

추진내용	추진기관	추진시기
사업공고	경기도, GBSA	'21. 03. ~ 05.
↓		
사업계획서 제출	신청기관 → GBSA	'21. 05.
↓		
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	GBSA	'21. 05.
↓		
서면 평가(1차) 개최	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	'21. 06.
↓		
발표 평가(2차) 개최	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	'21. 06.
↓		
평가결과 통보	GBSA → 주관기관	'21. 06.
↓		
수정사업계획서 접수	주관기관 → GBSA	'21. 06.
↓		
협약 체결	주관기관 ↔ GBSA	'21. 06월 말
↓		
도지원금 지급	GBSA	'21. 07월 초
↓		
과제진도관리	경기도, GBSA, 평가위원회	'21. 7. ~ '22. 6.
↓		
최종평가	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	'21. 8.
↓		
사후관리(종료 후 3년)	GBSA, 평가위원회	'21. 8. 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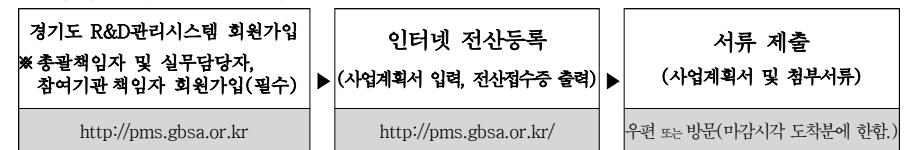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8 평가 우대사항

- 주관기관이 **성과공유제 이행**을 위한 **성과공유제 등록 중소기업**(성과공유계약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)으로 확인될 경우 **가점 5점 부여**
- 주관기관 신청 과제가 수입의존도가 높고, 수입대체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 과제 **34개 품목***에 해당될 경우 가점 5점 부여
 - * **별첨 11. 국산화 및 수입대체 가능 품목리스트**
- 주관기관이 **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**(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제출)으로 확인될 경우 **가점 3점 부여**
- 주관기관이 **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**의 경우 **가점 2점 부여**
 - 주관기관이 **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**이면서 **섬유, 가구, 식품기업**의 경우 추가 **가점 3점 부여**
 - ※ 적용대상 :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,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
 - ※ 경기도 북부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동두천, 연천, 가평
- **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道 지원금의 10배 이상인**(구매협약 동의서 제출) 경우 **가점 5점 부여**
 - ※ 단,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적용되며,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(최대 5점)

9 신청방법

□ 사업계획서 접수방법



-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/>)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(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)과 함께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)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
 - ※ 전산등록 마감일 18:00 까지 오프라인 제출(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)
 - ※ 전산등록기간에 등록(전산접수증 출력)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-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/>)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(<http://www.egbiz.or.kr/>)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

□ 인터넷 전산등록

- 전산 등록처 : 경기도 R&D 관리시스템(<http://pms.gbsa.or.kr/>)
- 전산 등록기간 : 2021. 5. 3.(월) ~ 5. 13.(목) 18:00까지
 -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와 기업제안 과제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은 동일
 - ※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

□ 신청서(서류) 제출

- 제출기간 : 2021. 5. 13.(목) 18:00까지 (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- 제출처 : (우13487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(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) 4층,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
- 제출서류(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연번	서 식 명	해당여부
①	전산접수증 1부 ※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	공통
②	사업계획서 8부 [별첨2] ※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 제본이 원칙, 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	
③	신청자격 자가진단표[별첨4]	
④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분) 사본 각 1부	
⑤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※ 영리기관에 한하며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분 제출	
⑥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) 인정서 사본 ※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분 제출	
⑦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재무제표의 경우,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세무사 확인본)' 원본을 제출	
⑧	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※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분 제출	
⑨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	해당시
⑩	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[별첨5]	공통
⑪	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 구매이행계획서[별첨6]	
⑫	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[별첨7]	
⑬	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	-

10 지원제한

□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현재 대·중소 동반성장 R&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
 - ※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
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-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개인회생·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경우.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
-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
- 외감 기업의 경우,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R&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(유사한 경우 포함)
 -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<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>

- ▶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- 과제 선정이 되었다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-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'기업'의 경우,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(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인정)
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
 -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
 -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
 -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 -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 완료가 곤란한 경우
 - 사업 신청일 이후, 사전지원제외(신청자격 상실)에 해당하는 경우

- 부당지원 수혜자 제재사항
 -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(횡령 등)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,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
 - ※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

-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
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
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
 -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」
 - 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11 문의처

- 문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
 - 양경석 선임연구원-(전화) 031-776-4853, (이메일) ksyang@gbsa.or.kr

- 별첨 : 1.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
 2. 사업계획서 서식
 3. 사업계획서 작성요령
 4. 신청자격 자가진단표(주관기관용)
 5. 참여의사 확인서(참여기관용)
 6.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
 7. 성과공유제 표준 계약서
 8. 성과공유제 설명자료
 9. 성과공유제 체크리스트
 10. 성과공유제 사용자 가이드라인
 11. 국산화 및 수입대체 가능 품목리스트